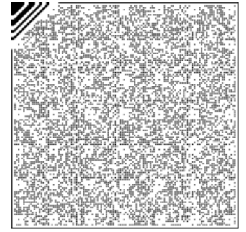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수신 강남구 소재 사업장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위험성 평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 시행 2026. 6. 1.)에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안내문을 배포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귀사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강화
- 근로자대표의 위험성평가 참여(요구 시) 및 근로자 주지 의무 신설
- 법 위반 사업주 대상 **과태료 부과 규정**(사업장 규모에 따른 시행일 유예) 등

붙임: 위험성평가 개정 안내문 1부. 끝.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근로감독관

임종빈

과장

전결 2026. 9. 29.

원종경

협조자

시행 산재예방감독과-6110

(2026. 9. 29.)

접수

우 0627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08 (대치동 1024 디마크 빌딩) 8층 산

/ www.moel.go.kr

재예방감독과

전화번호 02-3465-8442

팩스번호 02-6918-4315

/ been39kr@korea.kr

/ 비공개(6,7)